

우리 가족 행복이 쭉쭉쭉!

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- 근로장려세제

근로장려금



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 보너스

*근로장려세제 캐릭터

근로장려세제의 혜택으로 희망과 행복이 자라는 가정의 모습은 새싹이 나는 콩의 이미지로, 3중으로 강화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근로장려세제는 파스텔톤의 3색 무지개로 표현하였습니다.

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.

- ① **총소득 요건** :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,700만원 미만
- ② **부양자녀 요건** 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)
- ③ **주택 요건** :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,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
- ④ **재산 요건** :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

※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(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제외)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근로장려금 지급액

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	근로장려금 지급액
0~800만원 미만	근로소득 X 15%
800~1,200만원 미만	120만원
1,200~1,700만원 미만	(1,700만원 - 근로소득) X 24%

신청 및 지급

- **신청시기** : 매년 5월,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
- **신청방법** : 우편 · 방문신청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(www.eitc.go.kr)를 통한 전자신청
- **제출서류** :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

※ 첨부서류 : 근로소득 입증서류 (다음 서류 중 1가지 제출)

-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
-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
-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

재산 입증서류 (다음 서류 중 해당되는 경우 제출)

- ①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한 경우 : 임대차계약서 사본
-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: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,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, 토지상환채권 사본, 주택상환사채 사본

■ **지급시기** :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

- **안내사항** 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(배우자 포함)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
- ② 근로장려금을 하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
- ③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후 남은 금액만 지급됨

※ 문의 : 국세청 126 세리퀘 콜센터,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,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.eitc.go.kr

